

서울특별시장애인사격연맹

전문체육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2021.04.25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애인사격연맹(이하 ‘연맹’이라 한다) 정관 제30조(설치)에 따라 설치되는 전문체육위원회(이하 ‘본 위원회’라 한다)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) ① 본 위원회는 연맹 회장이 위촉한 연맹 이사 및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.

② 각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목적사업의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. 다만 당해 사업종료 후 해산한다.

제2장 임 원

제3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①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위 원 장 : 1인
2. 부위원장 : 1인
3. 위 원 : 5인 이내

②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통할, 대표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이를 대리한다.

제4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단,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최초 위원회 개최 일을 기준으로 한다.

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③ 개인적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즉시 위원장에게 사임원을 제출하여야 하며, 장애인체육회 이사 중에서 위촉된 위원이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위원직도 자동적으로 해촉 된다.

제5조(선출방법)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은 당해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

④ 전문체육위원회에는 정책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연맹의 전문체육소관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.

⑤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.

1. 동일 대학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/100을 초과할 수 없다.
2. 회장의 친족(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3. 연맹 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6조(임무 및 기능)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, 연구하고 연맹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전문체육 주요 사업 방향 설정 및 심의
2.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및 국제대회 참가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심의
3. 우수소질 보유자 발굴, 육성, 분석 및 경기력 향상에 대한 자문 및 심의
4. 경기단체 지원에 따른 지도, 감독, 평가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심의
5. 장비 구입 및 지원과 전문체육 용역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심의
6. 기타 전문체육에 대한 자문 및 심의

제7조(분과위원회 설치) ① 본 위원회의 사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 위원회의 결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분과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8조(회의 소집 및 정족수) ① 본 위원회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,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② 본 위원회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.

③ 본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차기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.

제9조(제척 및 회피) 위원은 본인,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10조(시행) 본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연맹 회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시행한다.

제11조(의견청취)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맹 관계직원 또는 해당 부문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2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맹 정관에 준한다.

부 칙 <2021.04.25.>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연맹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